님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공주시 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요청사항은 맨 마지막에 정리하였습니다.

해당부서와 공무원 (2023.5.18 당시 기준)
공주시 도로과　송태훈주무관, 이경희도로행정팀장, 박지동도로과장

공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부조리는 아래 경우입니다.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 행위

1. 공주시 공무원의 부조리

1) 민원처리 지연

통상적인 민원제출과 행정기관의 응답은 아래처럼 이루어집니다.

민원인		행정기관
민원작성 및 전달 (해당서식이 있는 경우 서식사용)	→	민원확인 및 접수 민원접수대장에 기록,등재 기한 내 신속하게 공문으로 민원회신

그런데 민원인의 민원제출과 응답공문 접수는 아래와 같이 **부조리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서식사용 민원서류 작성 및 전달(2022.5.3) -> 도로과 송태훈 주무관을 만나 민원설명과 함께 접수함

첨부1. 민원서류(2022.5.3)

수개월이 지나도록 민원회신 없음

수차례 민원결과 회신 독촉 ->시청에 갈때마다 송태훈주무관을 찾아 응답공문 독촉함.

1년 지나서 민원 응답공문 받음 (2023.5.18) -> 민원처리 지연

첨부2. 공주시 공문(2023.5.18)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과정을 확인해보니 **추가적인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의 민원처리 추가 잘못
- 민원서류 분실함
- 민원접수대장에 기록, 등재하지 않음

민원인이 제출한 첨부1 민원서류가 해당부서인 도로과에 없으며(분실) 접수대장에 등재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자연]보다 더 큰 부조리가 됩니다.
민원인이 2022.5.3, 민원서류 원본을 접수하고 사본을 남겨두었기에 다행이었습니다.

2) 민원응답 공문내용의 내용 부적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응답을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의 공문회신 내용에는 공정, 적법, 객관, 상식이 모두 어긋나 있습니다.
첨부2. 공주시 공문회신의 내용에는 [...진입로로 판명되어...]가 있습니다.
가)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흔적이 없는데 진입로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나)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길인데, 공무원은 직접 걸어서 진입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공무원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부조리입니다.
도저히 진입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첨부3 으로 설명합니다.

요청사항

1. 이처럼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 확인 후 조치하여
   공무원의 무능을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민원서류 분실이나 민원지연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우기며 뻔뻔한 거짓말로 시민을 기망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민원인의 민원서류
첨부 2. 공주시의 응답 공문
첨부 3. 사진과 설명

민원인 양xx (010.43xx.xxxx)
공주시 정안면 xxx xxx-x

추가사항(공주시 기획감사실의 부실조사)

1. 민원인은 위 내용에 대해, 공주시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 신고를 하였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내용
1) 민원처리가 1년이 넘는 것은 중대한 민원부조리입니다.
2) 민원서류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 도한 민원부조리입니다.
3) 비상식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는 응답내용(진입로판명)도 민원부조리입니다.

2.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조사결과 응답은 공무원을 감싸는 듯한
   부실한 조사결과였습니다.
1) 민원접수내역에 확인되지 않았으며
2) 공주시 응답공문은 민원인의 질의에 따른 안내목적의 공문이었다고 합니다.

3.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조사결과의 문제점
1) 민원서류의 접수와 접수대장의 기록/등재는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민원접수내역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 공무원의 민원서류 분실
   나) 공무원의 민원접수대장 기록,등재 누락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민원인이 민원서류 사본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요.
* 그런데 이 사본마저도 기획감사실의 조사팀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2) 또 시민의 정식 민원서류가 아닌, 단순질의에 공문응답을 하는 행정기관이 있을까요?
   단순질의에는 단순응답이 상식적이고 공문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는 공무원 감싸기의 전형입니다.

4.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길인데, 공무원은 직접 걸어서 진입했다고 하는
   공무원의 기망행위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5. 민원인은 2차 3차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기획감사실의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재조사없이 반복민원으로 취급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시민의 증거자료는 전혀 믿지 않고, 부조리 공무원의 변명만을 대변하는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엉터리조사 결과도 지적해야 할 사안입니다.